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정부가 경영상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경영상태에 관한 정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하도록 하며, 관계기관 간 소관 분야의 시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9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 안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등을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예로 제시하면서,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고,

안 제9조의2제4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은행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게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선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부는 안 제9조의2제2항의 ‘차주’라는 표현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안 제9조의2제4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는 소상공인만이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차주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지원의 대상인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범위와 판단기준, 중소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신용정보·개인정보 등을 처리하는 기관의 범위 등이 모두 중소기업부장관의 고시에 의존하게 되므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임이 필요한 사항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의 법규명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부는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개 정 안	중소벤처기업부 수정의견
제9조의2(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u>경영상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u> (이하 이 조에서 “ <u>경영위기 소상공인</u> ”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u>경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대출 채무를 부담한 소상공인으로서 매출 및 채무 등의 현황이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경영 지속의 곤란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u> (이하 이 조에서 “ <u>경영위기 소상공인</u> ”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 설>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개 정 안	중소벤처기업부 수정의견
<u><신 설></u> <u><신 설></u> ② 제1항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2.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3. 그 밖에 경영위기 징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차주 ③ 제2항의 연체우려 차주 등의 세부 기준은 중소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중소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경영 상태에 관한 정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3.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및 자금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및 자금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u><삭 제></u> <u><삭 제></u>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선별 및 그 경영 상태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의 안내를 요청할 수 있다.

개 정 안	중소벤처기업부 수정의견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은 제4항에 따른 선별 및 안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선별 및 정부 지원 시책의 안내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⑥ (생략)	④ (개정안 제6항과 같음)

- 한편, 안 부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부의 수정의견에 따라서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범위 등을 중소기업부령으로 위임할 경우 부령의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전문위원 윤 상 열)